

안전번호	제26-1호 (제465차 이사회)
보고년월일	2026. 1. 15.

보 고 사 항

전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

제 출 자	주 택 도 시 보 증 공 사 기획조정실장 김 용 한
제출년월일	2026. 1. 15.

1. 제464차 이사회 개최결과

가. 회의일시 : 2025. 12. 26.(금) 11:00

나. 회의장소 : 여의도 태흥빌딩 7층 1회의실

다. 참여현황 : 이사 10명 중 9명 참석

라. 회의결과 : 보고사항 1건 원안접수, 의결사항 12건 의결

구분	안전번호	안전명	회의결과
보고 사항	제25-17호	전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	원안접수
의결 사항	제25-56호	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	원안의결
	제25-57호	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5-58호	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	국경복, 최홍재, 심오택, 김성수, 김선주, 이은경, 우석원 위원 선임
	제25-59호	2025년도 연봉제직원 보수결정안	원안의결
	제25-60호	2025년도 직원 보수결정안	원안의결
	제25-61호	2025년도 경영지원직원 보수결정안	원안의결
	제25-62호	2026년도 연간자금계획안	원안의결
	제25-63호	후분양대출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5-64호	모기지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5-65호	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5-66호	2026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안	원안의결
	제25-67호	2026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변경안	원안의결

마. 주요 경영제언 및 조치현황

제언사항	조치현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 직원 및 고객이 실질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AX 사업 추진 필요 [심오택·국경복·윤호진 이사]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I 기반 서류검토 자동화* 등 직원 및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구축·추진 * 전세보증이행 청구서류 자동인식을 통한 반복 업무 경감 및 이행심사 기간 단축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금 유동성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할 필요 [심오택 이사]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시 자금 모니터링 지속, 자금 조달 필요 시 세부 차입계획 사전 수립 후 단계적 실행 예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종 교육업무시설 사업장 안전 관리 철저 당부 [심오택 이사]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정 용역 외 외부 전문가* 참여 정기·상시 안전점검 실시 중 * 조달청 공사관리관, 건설사업관리단 안전전담자 ○ 안전관리 전문기관 자문용역을 추진하여 안전관리 수준 강화 기반 마련 예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자 등 주택 도시기금 예산 조기 소진 대응을 위한 체계적 관리 필요 [윤호진 이사]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기금 예산 증액 및 실시간 관리시스템(총괄 대시보드) 구축 완료 ○ 자금집행 사전 승인절차 강화 조치 예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위사업비대출보증상품의 원만한 정착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사업관리 필요 [정진혁 이사]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워크숍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(총 8회), 상품출시 보도자료 배포(1.8) 등 사업 활성화 노력 지속

2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및 규정 : 별첨

나. 조치사항 : 이사회 회의록 및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공시
(공사 홈페이지 및 통합공시시스템)

【별첨】

관련 법령 및 규정

□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

제61조(이사회 회의록 작성) ①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, 장소, 참석자 명단,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,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□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

제34조(이사회 회의록 공개) 공공기관 이사회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 홈페이지와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고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□ 이사회규정

제8조 (의결 및 보고사항) ① ~ ③ (생략)

④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국정감사,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회계 감사와 동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
2.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(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한다)
3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
4.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나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